

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(수정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현행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,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6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법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은 정)